

현장실습 운영 변경 사항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교육부고시 제2021-19호(2021.7.6., 전부개정)  
- 적용 규정: 표준 현장실습학기제(공시대상)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교육시간 배정	자율	10~25% 이하	
출석 관리	유급휴일 출석 인정	실제 출석일 기준(휴일 제외)	
*실습지원비 지급	필수	필수	
실습지원 지급 기준	협의	최저임금액의 75~90% 이상 지급	

\*실습지원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

1)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제5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사전 교육,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이하인 경우로 한다.

2) 출석 관리(제16조)

- 공휴일, 제18조에 따른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실습 미 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실습이 실시된 일자로 출석관리를 한다.

3)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확립(제22조)

- 실습기관은 참여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 하며, 교육시간 비율(10~25%이하)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 75~90%의 금액을 지급 한다.

4) 정부부처(재정지원) 사업의 표준화된 지원비 기준 마련(제30조)

- 정부부처 등에서의 지원비 지급 시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한다.

1. 개 요

가. 사 업 명: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나. 실습기간: 2021. 9. 1.(수) ~ 12. 21.(화)

- 기간 내 1개월(실제출석일 20일 이상), 2개월(실제출석일 40일 이상), 3개월 이상(실제출석일 60일 이상) 실습 진행

다. 실습시간: 1주간 5일, 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기준으로 운영

라. 실습 진행 및 관리: 제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intern.jeju.ac.kr>)

마. 참여대상

구분	내용	비고
학생	제주대학교 재학생	
실습기관	제주대학교 가족회사, 도내·외 기업체, 연구소, 기관 등	
<b>※ 실습 운영 및 실습지원금 지급 관리</b> - LINC+사업단: LINC+사업 참여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 - (본부)현장실습지원센터: 제주대학교 1~2학년 재학생, LINC+사업 비참여학과 재학생		

2. 2021학년도 2학기 실습학기제 운영 내용

가. 운영절차

<b>대학</b>	2021.7.~8.	8.16.~8.25.	8.23. ~ 8.31.	9.1. ~ 12.21.	10.1. ~ 12.31.
	▶ 현장실습 공고	▶ 학생-기업 매칭	▶ - 사전교육 실시 - 상해보험 가입 - 전공 연관성 확인	▶ <b>[실습 진행]</b> 방문 점검 진행	▶ <b>[실습 종료]</b> 실습지원금 지급
<b>학생</b>	8.11.~8.24.	8.16.~8.25.	8.23. ~ 8.31.	9.1. ~ 12.21.	10.1. ~ 12.31.
	▶ - 참여 신청 - 수강 신청	▶ 선발여부 확인	▶ - 사전교육 참여 - 학과 서류 제출 (현장실습신청서)	▶ <b>[실습 진행]</b> 주간보고서 작성	▶ <b>[실습 종료]</b> - 최종보고서 제출 - 만족도조사 참여 - 학점 취득
<b>실습 기관</b>	8.9.~8.24.	8.16.~8.25.	9.1. ~ 12.21.	9.1. ~ 실습 시작 후 14일 이내	10.1. ~ 12.31.
	▶ 참여 신청 (기업지원금 지급 필수)	▶ 학생 선발	▶ <b>[실습 진행]</b> 출석부 작성	▶ 산재보험 가입 (가입서류 필수 제출)	▶ <b>[실습 종료]</b> - 기업지원금 지급 - 학생평가서 제출 - 만족도조사 참여

나.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개설 교과목

구분	학점	실습기간	비고	
전공	학과(전공)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	학과별 상이함	학과별 상이함	
일반 선택	현장실습1	3	실제출석일 기준 20일 이상	
	현장실습2	15	실제출석일 기준 75일 이상	
	현장실습3	15	실제출석일 기준 75일 이상	현장실습2 이수학생에 한해 신청 가능
	현장실습4	6	실제출석일 기준 40일 이상	
	현장실습5	12	실제출석일 기준 60일 이상	

나. 운영 일정

구 분	추진기간	주요내용
<실습기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신청	2021. 8. 9.(월) ~ 8. 24.(화)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a href="http://intern.jejunu.ac.kr">http://intern.jejunu.ac.kr</a> ) 회원 가입 및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작성 - 신규 참여 기업의 경우 사전 서면점검서 제출
<참여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및 LINC+ 실습신청	2021. 8. 11.(수) ~ 8. 24.(화)	<1차 신청 기간> 1. 수강신청: 하영드리미 /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2. 실습기관 선택: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1)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2) 실습기간 확인, 실습기관 선택
	2021. 9. 1.(수) ~ 9. 23.(목) *복학 신청 및 허가기간	<2차 신청 기간> * 복학 신청자 대상 추가 기간 운영 1. 수강신청: 하영드리미 /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2. 실습기관 선택: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1)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2) 실습기간 확인, 실습기관 선택
실습기관-참여학생 매칭	2021. 8. 16.(월) ~ 8. 25.(수)	- 실습생 선발 및 실습기관 확정 * 2차 신청기간 학생의 경우 별도의 매칭 기간 운영
참여학생 명단 (매칭명단) 안내	2021. 8. 26.(목) ~ 8. 31.(화)	- 참여학생 소속 학과에 안내 · 전공 일치 여부 확인
오리엔테이션	2021. 8. 23.(월) ~ 9. 23.(목)	- 참여 학생 기본소양 교육 및 행정사항 안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 안전교육 및 학생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 온라인 사전 교육 실시
현장실습학기제 진행	2021. 9. 1.(수) ~ 12. 21.(화)	- 최종 협의 된 실습기간에 따라 실습 진행 - 1개월, 2개월, 3개월 이상 실습 진행
현장 방문점검	2021. 9. 1.(수) ~ 12. 21.(화)	- 현장실습생 현장점검 - 현장실습기관 애로사항 확인 및 취업 연계
만족도 조사	2021. 9. 27.(월) ~ 12. 31.(금)	-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 실습 만족도조사 실시
실습종료	2021. 10. 1.(금) ~ 12. 21.(화)	- 실습생 학점 취득 - 실습지원금 지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3. 현장실습 실습지원금 지원

#### 가. 실습지원비 지급 내용

지급기관	지급 금액	내 용
LINC+ 사업단	455,000원 (1개월 기준)	- 1개월(실제출석일 기준 20일 이상) 기준의 지원금이며, 취업 또는 상해 등 으로 조기 종료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 - 3개월(실제출석일 기준 60일 이상) 이상의 장기 참여학생의 경우, 일할 지급

지급기관	지급 금액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할(주 단위 실습지원비 기준): 20,900원/일</li> <li>* 국고 및 지방비 지급 시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의 25% 미만 지급</li> </ul>
실습기관	<b>1,370,000원</b> (1개월 기준) *교육시간 25%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실습지원비 지급 의무</b></li> <li>- 교육시간 비율(10~25%이하)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 최소 75%이상으로 지급</li> <li>-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63,000원/일) 계산하여 지급</li> <li>- 지급방법: 학생에게 직접 지급</li> <li>* 금전으로 지급되지 않는 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현물 지원사항은 실습지원비로 인정되지 않음</li> <li>* 실습지원비 지급일은 당월 또는 익월 중 지급하는 시점을 명시하며,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되어야 함</li> </ul>
<p>※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중단/취소하거나 기타 재난 상황,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실습 일정 변경으로 실습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실습지원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p> <p>※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 2021년 최저임금(월 209시간, 고시기준) 1,822,480원</p> <p>※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p> <p>: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시간을 비율로 곱한 금액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li> <li>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li> <li>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li> </ol>		

나. LINC+사업단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참여 학생	도 내	실습비 - 1개월(실제출석일 기준 20일 이상) 기준 455,000원	LINC+기준
	도 외	실습비 - 1개월(실제출석일 기준 20일 이상) 기준 455,000원	LINC+기준
		숙박비 - 1개월(실제출석일 기준 20일 이상) 기준 300,000원 - 당일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한하여 지원	LINC+기준
		교통비 - 실습 참여학생 왕복 항공료 외 교통비 실비 지원	150,000원 이내 지원
		상해보험가입 - 실습기간 동안 상해보험 가입	
<p>※ 학생지원: 실습지원금은 1개월(실제출석일 기준 20일 이상) 단위로 지원하며, 특별한 사유로 실습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LINC+사업단에서 확인 후 일할(20,900원/일) 지원</p>			

#### 4. 기타사항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시행 2021.7.6.)

가.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제4조, 제6조)

- 1)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주어야 하며, 수강신청과 실습 진행의 학기가 다를 경우 인정되지 않음
- 2)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불인정(학교를 통하여 운영)

나. 출석관리(제16조)

- 1) 공휴일, 만근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실습이 실시된 일자로 출석관리를 함
- 2)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는 출석(지각 포함), 출석일자에 학생이 나오지 않은 경우 결석, (공)휴일 및 실습기관의 휴무일 등은 휴일로 관리

다. 실습생 휴일 보장(제18조)

- 1) 실습기간 1주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이상인 경우 1일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함(출석관리에 포함되지 않음)

#### 5. 현장실습학기제 유의사항

가. 참여대상별 의무사항

구분	의무사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전공 관련 분야의 실습기관에서만 실습 진행 가능</li> <li>- 실습 진행 전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사전 교육) 참여</li> <li>- 매칭 후 실습학기제 지원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li> <li>- 실습기업(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li> <li>-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업(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li> <li>- 현장실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한다.</li> <li>- 현장실습이 완료되었을 때 실습 최종보고서와 주간보고서, 출석부 등을 실습 종료 7일 이내에 소속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ul>
실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 증명서(취득자 명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 고시(2018.9.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li> <li>① 제출 기간: 실습 시작일 이후 14일 이내 / 제출처: 이메일(roddl526@naver.com)</li> <li>② 발급처: 고용·산재 토털서비스→증명원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사업자 취득자명부신청</li> <li>* 가족 기업의 경우 산재보험은 특례적용범위에 들어가며 가입 가능함(가입 필수)</li> <li>* 1인 사업자(장)의 경우도 사업자 외 현장실습생이 근로자로 간주되어 적용되므로 가입 필수</li> </ul> </li> <li>-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li> <li>- 지급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시간 비율(75~90%)을 곱한 금액 이상 지급</li> <li>* 교육시간 25% 기준으로 운영 시 1개월 기준 1,370,000원 이상 지급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li> </ul>

구분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사항 안내 및 안전 교육, 인권 보호</li> <li>- 현장실습 참여 학생 관리 및 학생 출석부 등록, 학생평가서 작성</li> <li>* 신규 참여 기업의 경우 사전 서면점검서 제출 / 제출처: 이메일(rod1526@naver.com)</li> <li>- 실습생의 적합한 부서 배치 및 실무 교육</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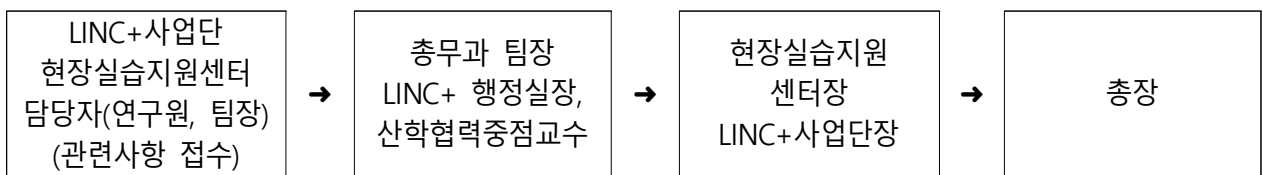
나. 현장실습 운영 원칙

구분	내 용
실습기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li> <li>-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li> <li>-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설비·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li> <li>-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해야 한다.</li> <li>-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해야 한다.</li> </ul>
현장실습 운영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며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li> <li>-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한다.</li> <li>-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실습이 실시된 일자로 출석관리를 하며, 실습기간 1주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이상인 경우 1일이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li> </ul>

6. 코로나19에 따른 현장실습 업무 조치

가. 보고 체계

- 1) 코로나19 관련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대학 관련부서 및 학과(또는 지도교수)에 알림
- 2) 관련부서 및 대학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나. 행정조치

- 1) 현장실습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해당 기업 실습 즉시 중단 및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실습생 모니터링
- 2) 실습 참여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즉시 실습을 중단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름
- 3)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에 따름

다. 학점 인정

- 1) 재택현장실습 진행
  - 재택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택현장실습 허용

- 해당학기 현장실습 기간의 1/4기간 동안은 재택현장실습 운영 가능

\* (재택현장실습 인정요건)

① 국가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국가 차원의 대응기준이 필요할 때

② 실습기관이 재택현장실습을 학교에 요청하고 구체적인 운영 및 학생 관리방법 (재택현장실습 신청서)을 학교에 제출

2) 현장실습의 5분의 4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과에 학점 처리 요청

3) 5분의 4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현장실습 대체 교과 개설 및 교과목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이수(U)로 평가되는 것을 방지

⇒ 수강신청 교과목 환불기간이 이후에는 학사과에 증빙을 첨부하여 공문을 통해 수강신청 취소 또는 변경 협조 요청

라. 비대면 방문점검 가능

1) 대학(교원, 현장실습지원센터, 전담부서 등)에서는 전염병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방문지도/점검을 원격으로 실시 가능함

2) 현장실습 방문지도/점검을 원격으로 실시할 경우 원격 화상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빙자료(사진 등)를 통해 실시 내역을 입증해야 함

⇒ 방문지도보고서 작성 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

마. 지원금 지급

1)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될 경우(감염 또는 자가격리 등) 실습한 기간 동안 일할 계산 (1일 20,900원)하여 지원금 지급함

7. 문의: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064-754-3125, 4416